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- 기관·단체의 명칭:
- 기관·단체의 대표자:
- 소재지:

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및 같은
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
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